

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07. 4.19 개정 2007.12.18 개정 2017, 5.2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정관 제31조의 9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평의원회(이하 "평의원회"라 한다)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
- 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 및 자격)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교원 평의원 5명
- 2. 직원 평의원 5명
- 3. 학생 평의원 1명
- ② 각 구성 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교원 평의원 : 국제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중인 자, 다만 총장, 부총장, 처장, 미래경영전략위원회 위원장, 산학협력단장, 평생학습추진본부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.
- 2. 직원 평의원 : 국제대학교 정규직원으로 재직중인 자
- 3. 학생 평의원 : 국제대학교 학생으로 재학중인 자
- ③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휴직 및 퇴직
- 2.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
- ④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휴학 및 졸업
- 2.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

제4조(위촉) ① 교원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전체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직원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

-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- 제5조(임원)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 -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 -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 -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- 제6조(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)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- ② 평의원은 제2조에 따라 의장에게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.
- 제7조(임기)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-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- ③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도록 해당 구성단위에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⑤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.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8조(예산)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 및 운영

- 제9조(회의) 평의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통보 한다. 다만 의장이 긴급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· 의결한다.
- 제11조(의결권)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- 제12조(의견제시)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회의록 및 회의의 공개)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 평의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
 - ②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결과를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- 제14조(출석 및 자료제출) ① 의장은 평의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 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다.
- 제15조(기밀유지)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합의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간사)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장이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하다.
 - ② 간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 및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 · 관리한다.

제4장 개방이사 및 감사

제17조(개방이사 추천)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



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(감사의 경우 단수)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)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 및 법인 정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어야 한다.

제19조(추천위원회) ① 추천위원회는 국제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.

-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대학평의원 : 3인
- 2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: 2인
-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0조(규정 개정) ① 정관에 명시된 평의원회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경우, 이 규정의 관련 조항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정된다.

② 제1항을 제외한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21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개정일)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개정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